

# GAAS :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

## 부실기업 신속·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(금융위원회)

### 1. 개요

-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“부실기업 신속·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”을 발표하였음
  -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신속·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임
-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,353 개사, 퇴출은 415 개사의 다산소사 구조 지속, 시총은 8.6 배로 크게 상승한 반면 지수는 1.6 배 상승에 그침
  -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더 신속하고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

### 2. 주요 내용

#### (1) 집중관리기간 운영

-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'26.2 월~'27.7 월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
  - 기존 상폐심사 3 개팀에 추가 신설된 1 개팀을 더해 4 개팀 20 명으로 구성
-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, '26 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 부여 예정
  - '26 년부터 코스닥 본부의 별도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, 시너지 효과 예상

## (2) 4 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

### ■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

- 시가총액 상장폐지기준의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

	'26.1월	'26.7월	'27.1월	'28.1월
현행	40 → 150억원	-	150 → 200억원	200 → 300억원
조기화	-	150 → 200억원	200 → 300억원	-

- 일시적 주가부양을 통한 상장폐지 회피 방지를 위해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 강화

### ■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

- 7.1일부터 주가 1,000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
- 동전주는 주가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쉬움
- 美 Nasdaq 의 경우 주가 1 달러 미만 주식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운영 중

### ■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

- 현재 상장폐지 요건인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의 경우도 요건으로 추가
- 단, 사업연도말 기준은 즉시 상장폐지, 반기기준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

### ■ 공시위반 요건 강화

-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최근 1 년간 공시벌점 15 점 누적을 10 점 누적으로 하향조정
-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시 상장폐지 대상범위에 포함

※ 4 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

## (3)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

-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 부여가능한 최대개선기간을 1 년 6 개월에서 1 년으로 축소
-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할 계획

## (4)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

- 현 시점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,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50 개사 내외에서 변경 후 약 150 개사 내외(100~220 여개사)가 될 것으로 추산

### 3.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바로 가동
-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'26.4 월부터 4 대 요건 강화는 '26.7 월부터 시행할 계획
-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되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

## 2025 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와 자기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 (금융감독원)

### 1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(재무사항 13 개, 비재무사항 4 개 항목)을 선정하여 사전예고

### 2. 주요 내용

#### 1) 재무사항(13 개 항목)

##### (1)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(5 개 항목)

- **(선정사유)**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은 투자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
- **(점검내용)** ①요약(연결)재무정보, ②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, ③대손충당금 설정현황, ④재고자산 현황, ⑤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

##### (2)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(3 개 항목)

- **(선정사유)**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조직 등의 파악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
- **(점검내용)**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(\*), ②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, ③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

(\* 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상 자금 부정 통제 추가(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별표 6 문단 25, '24.12.23. 개정)

### (3)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(5 개 항목)

- **(선정사유)**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,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
- **(점검내용)** ①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, ②감사보수 및 시간 등, ③내부감사기구·감사인 간 논의내용, ④전·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⑤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

## 2) 비재무사항(4 개 항목)

### (1) 자기주식 처리계획 및 현황 (2 개 항목)

- **(선정사유)** 자기주식 관련 사항은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, 특히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할 필요
- **(자기주식보고서 관련 점검내용)** 자기주식을 1%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공시되었는지 점검 (공시서식 §3-4-2, <별지 제 35-4 호> '25.12.30. 개정)
- **(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·처분 이행현황 점검내용)** 과거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한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 (공시서식 §3-4-2, '25.12.30. 개정)

### (2)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(2 개 항목)

- **(선정사유)** 중대재해 및 형사·행정제재 발생사실과 대응조치를 충실히 공개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해당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
- **(중대재해 발생사실 점검내용)**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사항 및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충실히 기재되어있는지 점검(공시서식 §11-3-16, '25.12.30. 개정)
- **(제재현황 점검내용)**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있는지 확인(공시서식 §11-3-1)

## 3. 향후 계획

- **(점검실시)** '26.5 월 중 2025 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
- **(점검결과 처리)**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'26.6 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

## 주가조작·회계부정 신고시 “상한없는” 포상금 지급 예정 (금융위원회)

### 1.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·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

### 2. 주요 내용

#### (1) 주가조작·회계부정 신고시 “상한없는” 포상금 지급

- 현재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에 상한이 있어 내부고발자 입장의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신고 유인이 떨어짐
  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도록 제도를 개편

#### (2) 적발·환수된 부당이득·과징금의 최대 30%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

- 현재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포상금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,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포상금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
  -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발·환수된 부당이득·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
  - ‘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(최대 30%\*)’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,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

(\*) 美, SEC 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100 만 달러 이상 금전적 제재를 확정하고 회수하는 경우 제재금의 30%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

-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불공정거래·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

#### (3) 금융위·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

- 현재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/접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
  -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근거 마련

### 3.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, 외부감사법 시행령, 불공정거래 포상규정,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.26 일(목)부터 4.7(화)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
-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·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 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

##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 및 집중감시 계획 (금융감독원)

### 1. 개요

-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(97.9%)이 12 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결과에 따른 불이익(상장폐지 등) 모면을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음
  - 최근 3 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(19 개사, 24 건)을 분석한 결과 79.1%(19 건)가 1~3 월 중 발생
- 금융감독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여 혐의 발견 시 엄중조치할 예정

### 2. 주요 내용

#### (1) 불공정거래 유형

- 결산관련 불공정거래는 결산이 진행되는 1~3 월에 집중 발생하며, 공개 전 매매에 감사의견 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
  - 최근 3 년간 적발·조치한 3 대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정보·시세조종·부정거래) 사건 175 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총 24 건
  - 결산 정보 관련 사건 대부분(19 건, 79.2%)이 1/4 분기에 발생하고, 나머지 사건(5 건, 20.8%)도 반기검토 등이 진행되는 3/4 분기에 발생하는 등 회계감사 시기와 중첩되는 양상
-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정보는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실적 악화 등 부정적 성격의 정보가 대부분(14 건, 87.5%)을 차지

- 주된 혐의자는 최대주주,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임
  - 혐의자 68 명 중 57 명(84%)이 당해 회사 임원(35 명), 최대주주(18 명), 직원(4 명) 등 내부자로 확인됨
  - 혐의자 대부분(66 명, 97%)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조치하였음

## (2) 불공정거래 특징

- 장기 실적 부진 (14 개사), 적자 전환(4 개사) 등 재무구조·자금사정이 열악함
  - 부채비율(평균 212%) 등이 상장사 평균("25.9 말 112.8%)을 크게 상회함
  - 원리금 지급연체, 기업회생절차 개시, 파산신청에 이르거나 대규모 자산 처분, 유상증자, 복합금융상품 발행 등을 시도하기도 함
- 최대주주·경영진 교체나 상호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영권이 불안정
  - 불공정거래 발생 1년 내 최대주주(3 개사) 또는 대표이사(7 개사) 변경
  - 교체된 최대주주·경영진이 은폐 또는 부실기업 이미지 탈피를 위해 상호를 변경하거나 기존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도 함
-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로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

## 3.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

### (1) 미공개정보 이용

- A 사 최대주주/대표이사 甲은 2 월경 동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(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) 정보를 직무상 지득
  -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통해 소유주식을 전량 매도
- B 사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동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
  - B 사 최대주주/대표이사 乙은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B 사 주식을 매도

### (2) 시세조종

- C 사 실질사주 丙은 특수관계인들 소유의 C 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, 다음 해 초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 제공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이 증가

-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C 사 임원 丁 및 증권사 직원 戊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여 주가를 조작

### (3) 부정거래

- D 사는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,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되는 상황
  - D 사 대표이사 己는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D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분을 확충

## 4. 기업 내부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

- 기업 내부자는 특히 결산 시기에는 주식거래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
  - 상장회사 임원·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 시 매매예정일 30 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공시, 위반 시 과징금(최대 20 억원)이 부과될 수 있음
-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미확인정보 등에 유의
  -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·제재받을 수 있음
- 적극적인 제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
  - 누구든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

## 5. 향후 계획

- 감사의견 비적정,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
  -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하여 신속·엄중한 조치
-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 중심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관련 제도·규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